



# 2025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총 제214차 -

**【개최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16:00

**【개최장소】** 서울대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이사 9명(정원 9명) / 감사 2명(정원 2명)

출석이사: Fr. 윤병길, Fr. 정진호, 오혜경, 심점섭, 전재희, 김선갑, 김영주, 권병규, 김경수(9명)

출석감사: Fr. 황인환, 오윤숙 (2명)

배 석: 사회사무국 부국장 Fr. 하성용,  
법인 부회장 Fr. 김원호, 법인사무국 팀장 4명

## 【의안상정】

제1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 변경(안) 승인 심의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기동부동산 물건 신축 공사」(안) 승인 심의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심의의 건

1. 「기동부동산」 물건
2. 「기동부동산」 물건

제4호 의안 「법인 재산 처분」(안) 승인 심의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심의의 건

1.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2. 장애인복지관 「공통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제6호 의안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202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202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제8호 의안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사업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심의의 건

제9호 의안 법인 직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추)인 심의의 건

## 【보고 및 기타 토의 사항】

### 【폐회】

##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은 오후 3시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들은 후,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신입 '외부추천이사' 2인 인사 소개

## □ 의장 인사 말씀

법인 제4차 임시이사회 참석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해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법인 「기본재산처분」 변경(안) 승인 요청” 등, 총 9건의 상정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한다. 임원분들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기 바란다.

## □ 전차 이사회기록 확인

의장은 출석 이사에게 전차 회의록에 대한 보완·수정할 부분에 대한 유무를 묻고, 출석 이사 전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전차 회의록을 확정하다.

## 의안 심의

### ■ 제1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 변경(안) 승인 심의의 건

- ◎ 의장 윤병길: 제1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 변경' (안) 승인 심의 건에 대하여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 상임이사 정진호: 본 의안은 '법인 「기본재산처분」 변경' (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상세 내용은 사무국 부회장 김원호신부님께서 보고해 주시겠다.
- ◎ 부회장 김원호: '법인 「기본재산처분」 변경(안)' 승인 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 법인 「기본재산처분」 변경(안)

#### ※ 본 상정 의안 관련 경과

1. 본 상정 의안은 2025년 제1차 임시이사회(2025.05.15.)에서 기 승인 가결된 제1호 의안 '법인「기본재산 처분」변경(안) 물건( )년립 동 의 신축 이 리·하늘 자. 2025년 5월 15일에서 ( )년립 1.

2. 당초,

전 동

철희와 서

가 신

로 신축

시설 이

안됨.

❑ 기본재산처분 변경 내용: 신림동 ' ' 교환' → 신림동 ' ' )'

❑ 처분 변경 유형: 매도 환 → 신

❑ 처분 변경 대상: 부동산

(단위:원)

종류	소재지		규모(㎡)	장부상가액	감정평가 평균액 (기본재산처분 허가 2차 조건 기준)	비고
부동산	토지 (대지)	서울	165.00			
	건물	상동 지하1 연면적	200.63			
	토지 (임야)	서울시	109.00			

※ 참고: 처분 변경 대상 부동산 위치 및 내·외부 사진



부 물건 위치(대지 및 건물)

부 물건 위치(임야)



외부 전경

내부 마당 전경

건물 내부(지지대 설치)

▣ 처분 변경 대상(부동산) 관련 종전 경과

1. 건물의 노후화 및 붕괴 위험 등에 따른 '호작업장' 이전

- 1) 위 '호작업장'은 본 회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작업장(이하 '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하였음.
- 2) 신림동 물건 소재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난 1976년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약 49년 경과)가 심하게 자카... 간 보기 없어 지상 2층 슬... 건물... 상태
- 3) ... 로 판정 되어 건물... 상태
- 4) 장... 시설 이용자에이과 진위 등의 아저은 의하 기극 아저즈치르 거르 네브 지카... 및 건물 전체에 비서단 비서단... 이었음.
- 5) 상기 ... 지 않아 아저서시 현격히 자카... 이적을 이전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42' (이하 ... )

2. ...

- 1) ...
- 2) ... 하여 신림동 기본재산... 하였으나 약성... 사용... 층

▣ 처분 변경 사유

- 1. ...
- 2. 이어 ...

3.			
4.	2011년 1월 11일 화재는 시설 건물이 토사에 매몰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래 일정대로 자기책에 반부담금 100% 지급(100% 지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1월 11일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시설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1년 1월 11일 화재는 시설 건물이 토사에 매몰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래 일정대로 자기책에 반부담금 100% 지급(100% 지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1월 11일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시설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1년 1월 11일 화재는 시설 건물이 토사에 매몰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래 일정대로 자기책에 반부담금 100% 지급(100% 지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1월 11일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시설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6.	선		를
7.	이		)'
<p>▶ 비고</p>			
<p>※</p>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1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임원에게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1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후,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상세의안 보고는 사무국 부회장이 보고함.

**제2호 의안: 법인 「( )」 물건 신축 공사」(안) 승인 심의의 건**

◎ 의장 윤병길: 제2호 의안인 ‘법인 「( )」 물건 신축 공사」(안) 승인 심의 건에 대하여 사무국 부회장 김원호신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제2호 의안, ‘법인 「( )」 신축 공사」(안) 승인 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 )」 물건 신축 공사」(안)

**※ 본 상정 의안 관련 경과**

- 본 상정 의안은 2025년 제1차 임시이사회(2025. 05. 15.)에서 기 승인 가결된 제2호 의안 **물건 신축 공** **관악구** **시**의 신축 **사** **내용임.**
- 이전 **의 시설 이전** **추진이 무산됨.**

**신축 공사 대상 부동산**

종류	소재지		규모 (㎡)	장부상가액 (원)	현 사용현황	비고
부동산	토지 (대지)	서울시	165.00		공실	
	건물	상동	200.63			
	토지 (임야)	서울	109.00			

**신축 공사 개요(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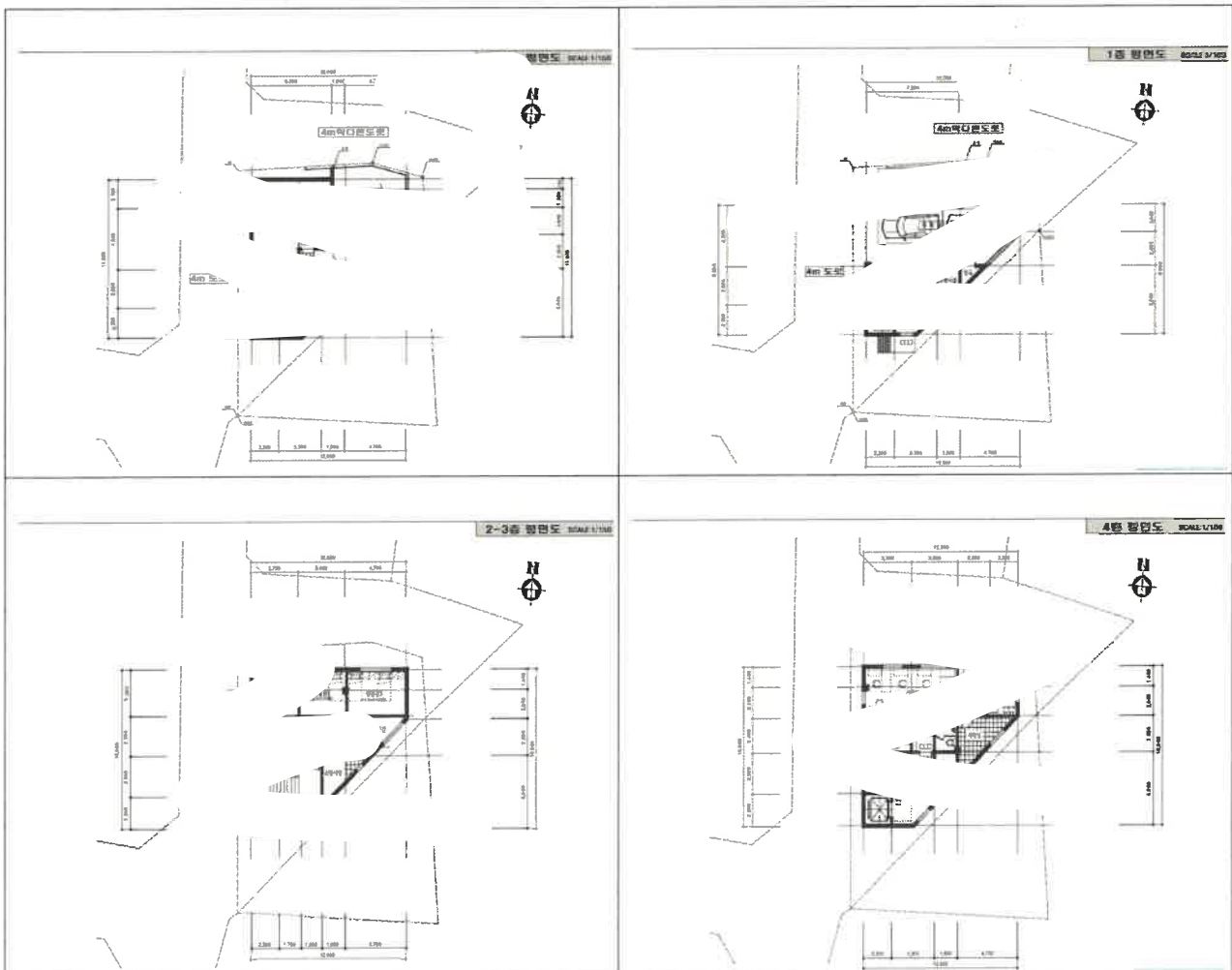
- 목적
  - 본 회 **이전**
- 신축 공사 규모·면적
  - 건물: **5층**  
**연면적 약 500㎡(약 162평)**
  - 토지: **200.00㎡(약 60평), 100.00㎡(약 33평)**
- 구조 형태:
  - 철근 콘크리트조·노유자시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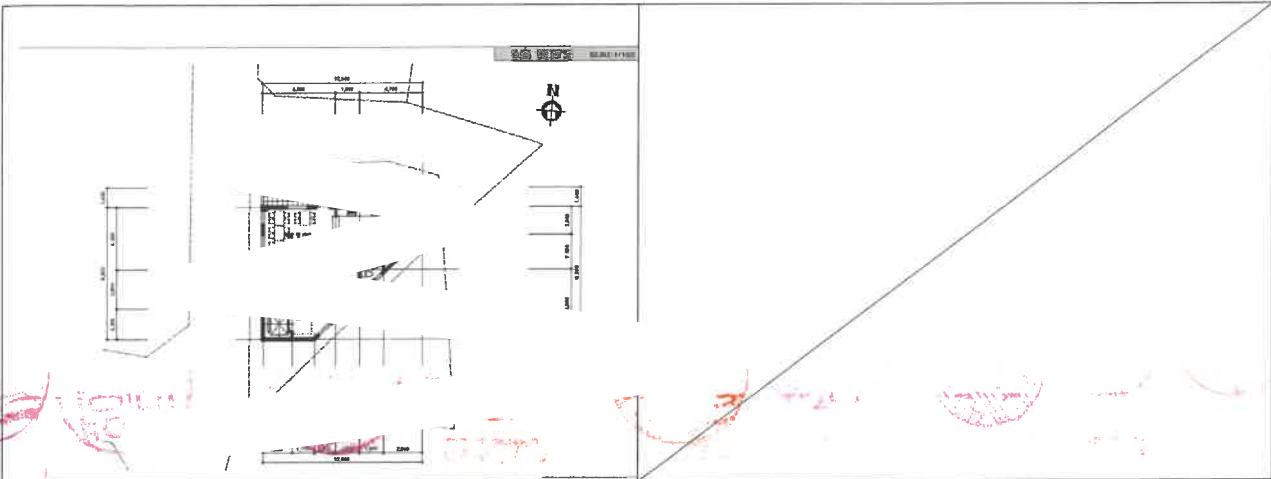
▶ **층별 공간 배치(안) / 공간 배치(안)**은 계획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구분	면적 (㎡)	공간 배치 계획	비고
지하	92.01	운 . 프로그램실), 화장실, 기계.창고실	피난계단실 추가
지상	78.78	주차장(차량 3대)	피난계단실 추가
지	95.58	이용인 생활실(2인 1실), 거실(사무공간 겸용), 화장실	생활실 총 3개실
지	95.58	이용인 생활실(2인 1실), 거실(사무공간 겸용), 화장실	생활실 총 3개실
지 1층	95.58	사무실, 상담실, 세탁실, 숙직.휴게실, 탕비실	
지하	78.78	식당, 조리실, 화장실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등 설치

▶ **신축 건물 가설계(안)**





※ 위 신축 건물 가설계(안)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신축 공사 사유

1. ... (faded text) ...
  2. ... (faded text) ...
  3. ... (faded text) ...
  4. ... (faded text) ...
  5. ... (faded text) ...
- 1) ... (faded text) ...
  - 2) ... (faded text) ...
  - 3) ... (faded text) ...
  - 4) ... (faded text) ...
  - 5) ... (faded text) ...
4. ... (faded text) ...
  5. ... (faded text) ...

▶ 신축 공사비 및 기간(추정)

공사비					공사기간	비고
합계	설계비	감리비 (구 건물 철거 감리비 포함)	시공비 (구 건물 철거비 포함)	부가세		
					(누계 포함)	-

▶ 신축 공사 자원 확보 계획

합계(예상)	송파동 물건 매도대금(예상)	정릉동 물건 매도대금(예상)	비고
			상 은, 로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2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임원에게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  
물건 신축 공사」(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심의의 건

1. 「  
」 물건
2. 「  
」 물건

◎ 의장 윤병길: 제3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승인 심의 건에 대하여 사무국 부회장 김원호  
신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김원호: 제3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  
물건」 승인 심의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송파동 물건'

※ 본 상정 의안 관련 경과

본 상정 시야은

기본재산 처분

(안) 승인 조

“ ” 물

건, ...

도 반영하고자 기시처리 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임.

□ 기본재산처분 내용: ... 건 '매도

1. 처분 유형: 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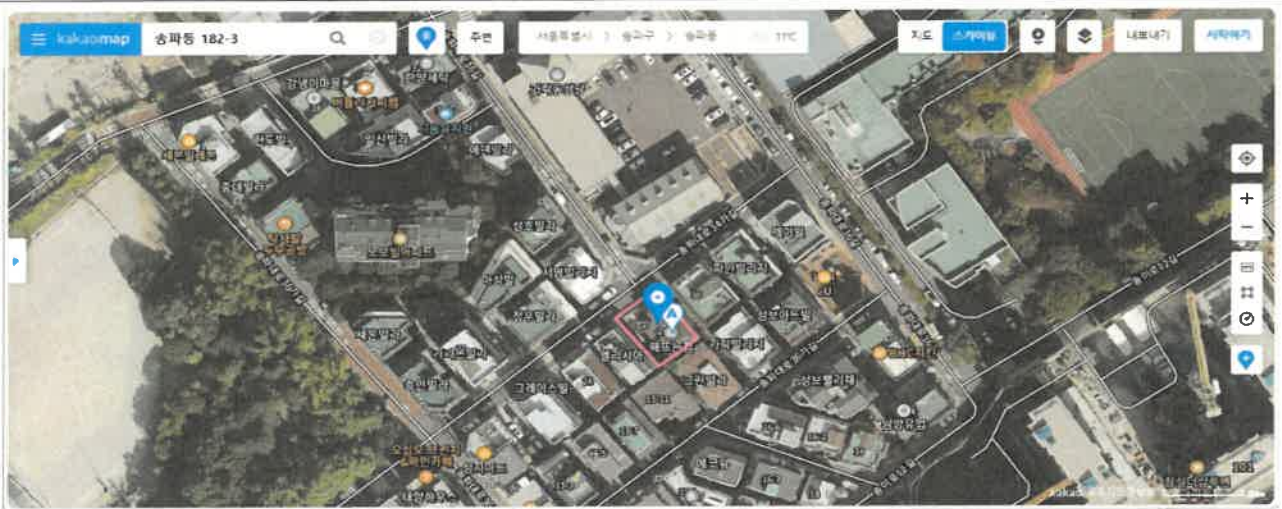
2. 처분 대상: 부동산

3. 처분 대상 부동산 개요

(단위: 원)

종류	소재지		규모 (㎡)	장부상가액	감정평가 평균액	비고
부동산	토지	서울시 ...	215.20			■ 지하 ... 기상1층: 공실
	건물	상동 자 ... 적	258.74			■ ... 무노 ... 활용 중

4. 처분 대상 부동산 위치 및 내·외부 사진



물건 위치



건물 전경



누수 피해 당시 모습



마당(보일러실 출입구)

5. 처분 사유

- 1) 위 ... 도로  
가무실로 사용  
중임 ... 상태임.
  - 2) ... 하였으며,  
수차 ...
  - 3) 건물 ... 비용이 ... 상태 유지에도 현장 ...
  - 4) 건 ... 회의를  
제정 ...
  - 5) ...  
이전 대 ...
- ▶ 비고: ... 확보하여  
이전날 예정임.

2. ... 물건

▶ 기본재산처분 내용: ...

1. 처분 유형: 매도
2. 처분 대상
3. 처분 대상 부동산 개요 (단위: 원)

종류	소재지		규모 (㎡)	장부상가액	감정평가 평균액	비고
부동산	토지	-1	266			공실
	건물	상동 3층	60.19			
		상동 2층	6.5			
		상동 단층	18.70			

4. 처분 대상 부동산 위치 및 내·외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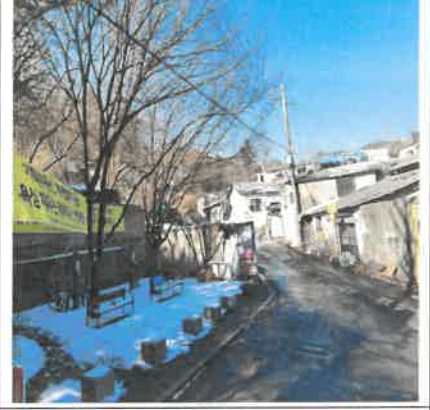
물건 위치



건물 전경 1



건물 전경 2



진입로 일대

5. 처분 사유

- 1) 위 부동산은 구 '...' (속) 2024. 11. ... (지)의 이용인 ... 사용 ... 으며, 시  
설 폐지 이후 ... 상태임.
- 2) 해 ... 되어 사업  
...
- 3) ... 용도  
...
- 4) ... 적으  
로 방목채산 ...
- 5) ... 땅  
...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3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임원에게 제3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3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처분」(안)' ... 물건-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 처분」(안) 승인 심의의 건

◎ 의장 윤병길: 제4호 의안인 「주식회사 [ ] 및 [ ]」 승인 심의 건에 대하여 사무국 부회장 김원호 신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제4호 의안, 「 [ ] 및 [ ]」 승인 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기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자: [ ] (인)</li> <li>■ 기부 [ ] (사)</li> <li>■ 평가금액: [ ] (원) 025.1</li> </ul>							
세부사항	<p>1. 관리방식: 본 법인 [ ]로 분류하 [ ] 관.</p> <p>2. 사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분야</td> <td style="width: 50%;"></td> <td style="text-align: center;">[ ]의 운영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td> <td></td> <td></td> </tr> </table> <p>3. 처분</p> <p>1) 주식 [ ] 필요</p> <p>2) 증여일로부 [ ] 2 증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각 가능</p>		분야		[ ]의 운영비	비율(%)		
분야		[ ]의 운영비						
비율(%)								

※ 근거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발취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 「정관」 제20조 발취

제20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재산의 취득, 처분, 유지관리와 차입금에 관한 사항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4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임원에게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4호 의안인 「주식회사 [ ] 등 [ ](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1.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2. 장애인복지관 「공통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 의장 윤병길: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사무국 부회장 김원호신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제5호 의안은 '법인 산하 시설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먼저 '장애인복지 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공통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을 보고드리겠다. 임원 여러분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 참고: 법인 자문변호사 및 자문노무사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을 완료함.

### 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 ■ 제·개정 경과

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정(정기이사회 승인, 2018년 2월 23일)
2. 제1차 개정(임시이사회 승인, 2019년 12월 19일)
3. 제2차 개정(정기이사회 승인, 2020년 2월 19일)
4. 제3차 개정(임시이사회 승인, 2020년 7월 28일)
5. 제4차 개정(임시이사회 승인, 2021년 10월 26일)

#### ■ 개정 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보건복지부「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내용 반영
2.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제9조(승급의 제한) 반영
3.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및「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개정 내용 등 반영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개정 내용 반영
5.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미사용 연가보상비 지급 임의규정 반영, 「2025년 서울시 시설평가지표」(관리지표-인적자원관리-직원복지) 반영

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2장 조직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구성) ②, ③, ④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와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위원장 선출 방법, 위원의 임기 변경 및 연임 가능 내용 추가</li> </ul> </li> </ul>
제3장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조(승호의 원칙) ②항의 2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9조(승급의 제한)에 의거하여, 징계처분 시 승호 제한 개월 수 변경</li> </ul> </li> <li>■ 제28조(승진의 제한) ②항의 1~3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9조(승급의 제한)에 의거하여, 징계처분 시 승진 제한 개월 수 변경</li> </ul> </li> <li>■ 제40조(정년) ①, ②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각 시설 유형별 정년 지침에 의거하여 정년과 퇴직일을 적용하고, 자부담 직원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함.</li> </ul> </li> </ul>
제4장 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조(육아휴직) ②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항,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기간 현행 1년에서 최대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사항 추가 및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1회→3회) 적용</li> </ul> </li> <li>■ 제4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④, ⑦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영, 대상범위 확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가산 적용</li> <li>➡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항에 의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사용 시 1회 최소 기간 변경(3개월→1개월)</li> </ul> </li> <li>■ 제47조(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도의 운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및 2025년 「서울시 시설평가 지표」 관리지표-인적자원관리-직원복지 반영, 서울시 지침 기준 총 9종의 직원복지후생제도 적용</li> </ul> </li> </ul>
제5장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0조(연차유급휴가) ⑤항 4호, 5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반영,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으로 간주</li> </ul> </li> </ul>

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 제51조(미사용 유급휴가 촉진) 개정, ②항 추가

-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적용, 미사용 유급휴가 사용 촉진 후 직원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휴가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
- ▶ 서울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반영, 미사용 연가보상비 최대 3일까지 지급에 관한 임의규정 추가(의무사항은 아니며, 법인전입금 및 비지정 후원금 재원 여유분 보유 시 지급 가능)

■ 제53조(경조휴가) 개정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10일 → 20일)

■ 제55조(산전·후 휴가 등) ①, ③, ④항 개정

-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반영, 미숙아 출산 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내용 추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근로자로 개정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반영,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휴가 지원으로 개정

■ 제56조(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의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10일 → 20일, 청구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 분할사용 횟수 1회 → 3회로 개정

■ 제60조(병가) 삭제

- ▶ 본 규정 신설 조항 제47조(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도의 운영) ②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 신설에 따른 삭제

■ 제62조(난임치료휴가) ①, ②, ③항 개정, ④항 신설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의거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연간 3일, 유급 1일 → 연간 6일, 유급 2일)
-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되는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

■ 제63조(자녀돌봄휴가) 삭제

- ▶ 본 규정 신설 조항 제47조(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도의 운영) ③항 ‘서울시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에 따른 삭제

■ 제64조(장기근속휴가) 삭제

- ▶ 본 규정 신설 조항 제47조(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도의 운영) ①항 ‘장기근속 휴가제도’ 신설에 따른 삭제

제7장  
보수

■ 제67조(지급일) ②항 추가

-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의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필수 기재 사항 반영

※ 이하, 개정(안) 본문 참조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b>제2장 조직 및 운영</b>	<b>제2장 조직 및 운영</b>	
<p><b>제7조(구성)</b></p> <p>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의 장</li> <li>2. 시설 이용(생활)인 대표</li> <li>3. 시설 이용(생활)인의 보호자 대표</li> <li>4. 시설 종사자 대표</li> <li>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li> <li>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li> <li>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장이 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 내지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p>	<p><b>제7조(구성)</b></p> <p>① 변동 없음.</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8. 변동 없음.</li> <li>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del>시설장이 하거나</del>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li> <li>④ 위원의 임기는 <del>2년 내지</del> 3년으로 하되 <del>연임할 수 있고</del>,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li> <li>⑤ 변동 없음</li> </ol>	<p><b>[변경·추가·삭제]</b></p> <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자격을 가진 위원은 2명 초과 불가 내용 반영</li> <li>▪ 위원장 선출 방식: 시설장이 하거나 위원 중 호선 → 위원 중 호선</li> <li>▪ 위원의 임기 : 2년 내지 3년 → 3년</li> <li>▪ 위원 연임 가능 내용 추가</li> </ul>
<b>제3장 인사</b>	<b>제3장 인사</b>	
<p><b>제24조(승호의 원칙)</b></p> <p>① 직원에 대한 정기승호는 해당연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하여 실시하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인정한다.</p> <p>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기간 동안 승호를 시키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li> </ol>	<p><b>제24조(승호의 원칙)</b></p> <p>① 변동 없음.</p> <p>② 변동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동 없음.</li> <li>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ol>	<p><b>[변경]</b></p> <p>※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9조(승급의 제한)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처분 시 승호 제한 개월 수 변경</li> </ul>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 1년, 감봉 6월, 견책 3월이 경과되지 <u>아니</u> 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직 1년 → 18월</li> <li>➔ 감봉 6월 → 12월</li> <li>➔ 견책 3월 → 6월</li> </ul>
<p><b>제28조 (승진의 제한)</b></p> <p>① 징계처분,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다만 육아휴직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예외로 한다.</p> <p>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 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직: 1년</li> <li>2. 감봉: 6월</li> <li>3. 견책: 3월</li> </ol>	<p><b>제28조 (승진의 제한)</b></p> <p>① 변동 없음.</p> <p>② 변동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직: 18월</li> <li>2. 감봉: 12월</li> <li>3. 견책: 6월</li> </ol>	<p><b>[변경]</b></p> <p>※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9조(승급의 제한)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처분 시 승진 제한 개월 수 변경</li> <li>➔ 정직 1년 → 18월</li> <li>➔ 감봉 6월 → 12월</li> <li>➔ 견책 3월 → 6월</li> </ul>
<b>제4장 복무</b>	<b>제4장 복무</b>	
<p><b>제40조(정년)</b></p> <p>① <u>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시설장은 만 65세로 한다.</u></p> <p>② <u>직원 및 시설장의 퇴직일은 해당연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한다.</u></p>	<p><b>제40조(정년)</b></p> <p>① <u>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인력의 정년은 만 65세), 시설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정년 도래 시 퇴직일은 해당연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정한 기준일에 따른다.</u></p> <p>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부담 직원의 정년 및 퇴직일은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b>[변경]</b></p> <p>※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각 시설 유형별 정년 지침에 따라 정년과 퇴직일을 적용하고, 자부담 직원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함.</p>
<p><b>제42조(육아휴직)</b></p> <p>① 시설은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p> <p>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다.</p> <p>③ 시설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p>	<p><b>제42조(육아휴직)</b></p> <p>① 시설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p> <p>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b>[변경·추가]</b></p> <p>※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제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p> <p>2024. 10. 22. 개정 내용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li> <li>➔ 1회 → 3회</li> </ul>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④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 시설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u>기간</u>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p>	<p>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p> <p>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p> <p>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p> <p>③ 변동 없음.</p> <p>④ 변동 없음.</p> <p>⑤ 시설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u>기간</u>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추가 사용 가능 사항 신설</li> </ul>
<p><b>제4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b></p> <p>① 시설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②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설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u>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u></p> <p>⑤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4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b></p> <p>① 시설은 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u>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변동 없음.</p> <p>③ 변동 없음.</p> <p>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u>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u></p> <p>⑤ 변동 없음.</p> <p>⑥ 변동 없음.</p> <p>⑦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p>	<p><b>[변경 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li> <li>2024. 10. 22. 개정 내용 적용</li> <li>■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대상범위 확대</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제한 사유 명시</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가산적용</li> <li>■ 육아기 단축근로 분할 사용 시 1회 최소 기간 변경</li> <li>➔ 3개월 → 1개월</li> </ul>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⑥ 시설은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p> <p>⑦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b>제47조(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도의 운영)</b></p> <p>시설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직원복지후생 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연도의 「서울시 지침을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기근속 휴가제도</li> <li>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평가 제도</li> <li>③ 서울시 가족돌봄 휴가제도</li> <li>④ 건강검진 휴가제도</li> <li>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li> <li>⑥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li> <li>⑦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li> <li>⑧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li> <li>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지원</li> </ol>	<p><b>[신설]</b></p> <p>※ 서울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025년 「서울시 시설평가지표」 관리지표-인적자원관리-직원복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항 명칭: 본 규정 제43조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④~⑦항의 '가족돌봄휴가'와 중복되어, '서울시 가족돌봄 휴가제도'로 명칭 구분</li> </ul>
제5장 휴가	제5장 휴가	
<p><b>제47조(주휴일)</b></p> <p><b>제48조(유급휴일)</b></p> <p><b>제49조(휴일의 중복)</b></p>	<p><b>제48조(주휴일)</b></p> <p><b>제49조(유급휴일)</b></p> <p><b>제50조(휴일의 중복)</b></p>	<p><b>[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번호 순연</li> <li>➔ 제47조~제49조</li> <li>→ 제48조~제50조</li> <li>➔ 순연된 조문 내용 변동 없음.</li> </ul>
<p><b>제50조(연차유급휴가)</b></p> <p>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p>	<p><b>제51조(연차유급휴가)</b></p> <p>① 변동 없음.</p>	<p><b>[변경·추가]</b></p> <p>※ 「근로기준법」 제60조</p>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p> <p>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p> <p>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시간</li> <li>2. 임신 중의 여성이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시간</li> <li>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li> </ol>	<p>② 시설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③ 시설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p> <p>④ 시설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li> <li>2. 임신 중의 여성이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li> <li>3. 변동 없음.</li> <li>4. 제45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li> <li>5. 제56조 제4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li> </ol>	<p>(연차 유급휴가) 2024. 10. 22. 개정 내용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일수 산정 시 육아기 및 임신기 단축근로 기간을 정상출근으로 인정하는 내용 적용</li> <li>■ 조번호 순연 ➔ 제50조→제51조</li> </ul>
<p><b>제51조(미사용 유급휴가 축진)</b>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축진하여야 하며, 시설의 사용축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p>	<p><b>제52조(미사용 유급휴가 축진)</b></p> <p>① 시설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축진하여야 하며, 시설의 사용축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 시설은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미사용 연가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법인 전입금 및 비지정 후원금에서 가용 예산이 있</p>	<p><b>[변경·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축진) 반영</li> <li>※ 서울시「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반영</li> <li>■ 소멸된 미사용 유급휴가 보상의무 없음.</li> </ul>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는 경우 최대 3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 퇴직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 귀책사유 미 해당 내용 반영</li> <li>■ 미사용 연가보상비 3일까지 지급에 관한 임의규정 추가</li> <li>■ 조번호 순연 → 제51조→제52조</li> </ul>																																																								
<p><b>제52조(유급휴가의 대체)</b> 시설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p>	<p><b>제53조(유급휴가의 대체)</b> 변동 없음.</p>	<p><b>[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번호 순연 → 제52조→제53조</li> </ul>																																																								
<p><b>제53조(경조휴가)</b></p> <p>① 시설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 유급휴가를 준다.</p> <p>② 휴가를 얻고자하는 자는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51 1142 646 1803">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결혼</td> <td>본인</td> <td>7일</td> </tr> <tr> <td>자녀</td> <td>2일</td> </tr> <tr> <td>형제, 자매</td> <td>해당일</td> </tr> <tr> <td rowspan="4">사망</td> <td>배우자, 자녀</td> <td>7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td> <td>5일</td> </tr> <tr> <td>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td> <td>2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td> <td>해당일</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10일</td> </tr> <tr> <td>칠순 등</td>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해당일</td> </tr> <tr> <td>기타 사유</td> <td>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청원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발생한 때</td> <td>필요일</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일수	결혼	본인	7일	자녀	2일	형제, 자매	해당일	사망	배우자, 자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해당일	출산	배우자	10일	칠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해당일	기타 사유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청원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일	<p><b>제54조(경조휴가)</b></p> <p>① 변동 없음.</p> <p>② 휴가를 얻고자하는 자는 위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70 1052 1157 1702">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결혼</td> <td>본인</td> <td>7일</td> </tr> <tr> <td>자녀</td> <td>2일</td> </tr> <tr> <td>형제, 자매</td> <td>해당일</td> </tr> <tr> <td rowspan="4">사망</td> <td>배우자, 자녀</td> <td>7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td> <td>5일</td> </tr> <tr> <td>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td> <td>2일</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td> <td>해당일</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20일</td> </tr> <tr> <td>칠순 등</td>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해당일</td> </tr> <tr> <td>기타 사유</td> <td>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청원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발생한 때</td> <td>필요일</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일수	결혼	본인	7일	자녀	2일	형제, 자매	해당일	사망	배우자, 자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해당일	출산	배우자	20일	칠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해당일	기타 사유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청원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일	<p><b>[변경]</b></p> <p>※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2(배우자 출산 휴가) 2024. 10. 22. 개정 내용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변경 → 10일 → 20일</li> <li>■ 조번호 순연 → 제53조→제54조</li> </ul>
구분	내용	일수																																																								
결혼	본인	7일																																																								
	자녀	2일																																																								
	형제, 자매	해당일																																																								
사망	배우자, 자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해당일																																																								
출산	배우자	10일																																																								
칠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해당일																																																								
기타 사유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청원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일																																																								
구분	내용	일수																																																								
결혼	본인	7일																																																								
	자녀	2일																																																								
	형제, 자매	해당일																																																								
사망	배우자, 자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해당일																																																								
출산	배우자	20일																																																								
칠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해당일																																																								
기타 사유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청원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일																																																								
<p><b>제54조(생리휴가)</b> 시설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 휴가를 준다.</p>	<p><b>제55조(생리휴가)</b> 변동 없음.</p>	<p><b>[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번호 순연 → 제54조→제55조</li> </ul>																																																								
<p><b>제55조(산전·후 휴가 등)</b></p> <p>① 시설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게 90일간</p>	<p><b>제56조(산전·후 휴가 등)</b></p> <p>① 시설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게 90일간</p>	<p><b>[변경·추가·삭제]</b></p> <p>※ 「근로기준법」 제74조</p>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하며, 특히 산후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시설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p> <p>② 시설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게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이한 근무로 전환시켜야 한다.</p> <p>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p> <p>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p> <p>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p> <p>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또는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p> <p>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또는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p> <p>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p> <p>④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p> <p>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통상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p>	<p>(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산후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시설에서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p> <p>② 변동 없음.</p> <p>③ 변동 없음.</p> <p>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p> <p><del>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del></p> <p>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또는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p> <p><del>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또는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del></p> <p>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p> <p>④ 시설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p> <p>⑤ 시설장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통상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p>	<p>(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2024. 10. 22. 개정 내용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전후휴가 기간 추가 내용 반영</li> <li>■ 유산 또는 조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일수 변경</li> <li>■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기간 기준 변경</li> <li>■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li> <li>■ 조번호 순연 ➔ 제55조→제56조</li> </ul>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b>제56조(배우자 출산휴가)</b> 시설은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회 분할사용 할 수 있다.</p>	<p><b>제57조(배우자 출산휴가)</b> 시설은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회 분할사용 할 수 있다.</p>	<p><b>[변경]</b></p> <p>※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2024. 10. 22. 개정 내용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10일→20일), 청구기간(90일→120일), 분할사용 횟수(1회→3회) 변경</li> <li>■ 조번호 순연 → 제56조→제57조</li> </ul>
<p><b>제57조(임산부 정기건강진단)</b> <b>제58조(휴가의 신청)</b> <b>제59조(휴가일수의 계산)</b></p>	<p><b>제58조(임산부 정기건강진단)</b> <b>제59조(휴가의 신청)</b> <b>제60조(휴가일수의 계산)</b></p>	<p><b>[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번호 순연 → 제57조~제59조 → 제58조~제60조</li> <li>→ 순연된 조문 내용 변동 없음.</li> </ul>
<p><b>제60조 (병가)</b></p> <p>①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나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li> <li>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 또는 이용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의사진단서만 가능)</li> <li>3.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입원, 수술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li> </ol> <p>②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통상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병가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b>[삭제]</b></p> <p>※ 본 규정 신설 조항 제 47조(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도의 운영) ②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 신설에 따른 삭제</p>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단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④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 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p> <p>⑤ 직원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b>제62조(난임치료휴가)</b></p> <p>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2조(난임치료휴가)</b></p> <p>① 시설장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시설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시설은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b>[변경·추가]</b></p> <p>※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3(난임치료휴가) 2024.10.22. 개정 내용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적용</li> <li>➔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li> <li>■ 비밀유지 의무 신설 추가</li> </ul>
<p><b>제63조(자녀돌봄휴가)</b></p> <p>① 시설은 직원이(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직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량휴가일,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의 병가 등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p> <p>1. 자녀의 입학식 및 졸업식</p> <p>2. 학부모 총회,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p> <p>② 휴가는 반일단위로(4시간)도 신청할 수</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b>[삭제]</b></p> <p>※ 본 규정 제47조(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도의 운영) ③항 ‘서울시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에 따른 삭제</p>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있으며, 연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직원 1인당 연 3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p> <p>③ 시설의 직원이 부부일 경우에는 직원 각각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b>제64조 (장기근속휴가)</b></p> <p>① 시설은 직원이(5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장기근속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직원의 장기근속기간은 동일법인 내에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은 제외한다.</p> <p>③ 장기근속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48 1081 639 1216"> <tr> <td>근속기간</td> <td>5년이상~10년미만</td> <td>10년이상~20년미만</td> <td>20년이상~30년미만</td> <td>30년이상</td> </tr> <tr> <td>휴가일수</td> <td>5일</td> <td>10일</td> <td>10일</td> <td>10일</td> </tr> </table> <p>④ 휴가신청은 휴가개시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p> <p>⑤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휴가일수는 10일에 한하여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⑥ 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은 불가능하며, 분할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p>	근속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b>[삭제]</b></p> <p>※ 본 규정 제47조(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제도의 운영) ①항 ‘장기근속 휴가제도’ 신설에 따른 삭제</p>
근속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b>제6장 재무회계</b>	<b>제6장 재무회계</b>											
<p><b>제65조 (재무회계)</b></p> <p>본 시설의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p>	<p><b>제63조 (재무회계)</b></p> <p>변동 없음.</p>	<p><b>[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번호 순연</li> <li>➔ 제65조→제63조</li> </ul>										
<p><b>제66조 (재무회계담당자)</b></p> <p>회계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재무회계담당자를 둔다.</p>	<p><b>제64조 (재무회계담당자)</b></p> <p>변동 없음.</p>	<p><b>[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번호 순연</li> <li>➔ 제66조→제64조</li> </ul>										
<b>제7장 보수</b>	<b>제7장 보수</b>											
<p><b>제67조(지급일)</b> 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p>	<p><b>제65조(지급일 등)</b></p>	<p><b>[변경·추가]</b></p>										

장애인복지시설 「공통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본문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까지의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한다.	<p>① 급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p> <p>② 시설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직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p>	<p>※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021. 5. 18. 개정 내용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필수 기재 사항 반영</li> <li>■ 조번호 순연 → 제67조→제65조</li> </ul>
<p>제68조(급여의 지급기준)</p> <p>제69조(퇴직금의 지급)</p> <p>제70조(근무형태)</p> <p>제71조(임금의 구성항목)</p> <p>제72조(가산임금)</p>	<p>제66조(급여의 지급기준)</p> <p>제67조(퇴직금의 지급)</p> <p>제68조(근무형태)</p> <p>제69조(임금의 구성항목)</p> <p>제70조(가산임금)</p>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번호 순연 → 제68조~제84조 → 제66조~제82조</li> <li>→ 순연된 조문 내용 변동 없음</li> </ul>
제8장 이용(생활)규정	제8장 이용(생활)규정	
제73조(이용(생활))	제71조(이용(생활))	
제9장 이용(생활)인 인권	제9장 이용(생활)인 인권	
제74조(이용(생활)인 존중)	제72조(이용(생활)인 존중)	
제75조(이용(생활)인 권익보호)	제73조(이용(생활)인 권익보호)	
제76조(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제74조(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제77조(이용(생활)인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제75조(이용(생활)인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제10장 직원 인권	제10장 직원 인권	
제78조(직원 인권보장 원칙)	제76조(직원 인권보장 원칙)	
제79조(직원 인권보호 책무)	제77조(직원 인권보호 책무)	
제80조(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보장 등)	제78조(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보장 등)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7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82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80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8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장애인복지관 「공통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 ▶ 제·개정 경과

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장애인복지관 공통운영규정] 제정(임시이사회 승인, 2012년 6월 19일)  
※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개관(2013년) 시 「장애인복지관 공통운영규정」 반영 운영규정 제정
2. 제1차 개정(임시이사회 승인, 2019년 5월 16일)
3. 제2차 개정(임시이사회 승인, 2020년 10월 28일)
4. 제3차 개정(임시이사회 승인, 2021년 10월 26일)
5. 제4차 개정(임시이사회 승인, 2024년 5월 21일)
6. 제5차 개정(임시이사회 승인, 2025년 5월 15일)

### ▶ 개정 사유

1.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부설시설의 운영규정 부재에 따른 본 운영규정 준용 명문화
2. 한우리정보문화센터 2025년 자치구(서초구청) 지도점검 지적사항 반영(외부 인사위원 회의수당 지급 근거 명문화)
3. 한우리정보문화센터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 반영(시설 지침 제.개정 절차 재고 의견)

### ▶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운영 규정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규정 및 지침) ③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부설 서리풀주간이용센터, 서초구립주간이용센터는 단일 시설로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별도 규정 없이 지침으로 운영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관련 시설 운영규정 부재)</li> <li>➡ 복지관 부설시설의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준용 근거 조항 추가</li> </ul> </li> </ul>
인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의2(수당 지급)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리정보문화센터 2025년 자치구(서초구청) 지도점검 당시,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위원 회의수당 지급 기준 미흡 지적</li> <li>➡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년 12월) p.72 수당의 자의적 지급 금지에 따라 인사규정에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li> </ul> </li> </ul>
부칙 (공통-운영/인사/복무/운영위원회 운영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지침의 제개정 등) ①, ②항 내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약 50여개의 시설 지침 제.개정 시마다 운영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는 것은 소모적인 절차라는 의견 및 지침 제.개정 절차 개선 제안</li> <li>➡ 시설 지침 제.개정 시 관장 승인 후 시행 및 운영위원회 보고 절차로 변경</li> </ul> </li> </ul>

※ 이하, 개정(안) 본문 참조

장애인복지관 「공통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본문

운영규정(총론)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b>제3조(규정 및 지침)</b> ① 복지관은 “운영위원회, 인사, 복무” 등의 규정을 두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사항(예: 조직, 여비, 문서관리, 차량, 물품관리, 위임전결 등)은 복지관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b>제3조(규정 및 지침)</b> ① 변동 없음. ② 변동 없음. ③ 복지관 산하 부설시설(주간이용센터 등)의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b>[추가]</b>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반영 ■ 복지관 산하 부설시설(주간이용센터 등)의 경우 본 규정 준용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 마련

인사규정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2장 인사위원회	제2장 인사위원회	
<b>신설</b>	<b>제7조의2(수당 지급) 채용심사위원 중의 부인사위원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	<b>[신설]</b>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수당의 자의적 지급금지(p.72) 반영 ■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마련

부칙(공통-운영/인사/복무/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b>제4조(지침의 제개정 등)</b> ① 본 규정의 내용 및 그 이외의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은 해당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b>제4조(지침의 제·개정 등)</b>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제·개정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b>[변경]</b> ※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지침 제.개정 절차 재고 의견 반영 ■ 시설 지침 제.개정 절차 변경 ➔ 운영위원회 심의 후 법인 보고 → 관장 승인 후 시행, 운영위원회 보고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5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출석 임원에게 제5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시설 「운영규정」 개정(안)'-장애인 복지시설 공동운영규정-장애인복지관 공동운영규정- 승인 요청 건은 수정 보완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 제6호 의안: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202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 의장 윤병길: 제6호 의안인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202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사무국 부회장 김원호신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김원호: 제6호 의안,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202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법인과 산하 직영·수탁시설 가운데 예산 집행에 있어 수입 또는 지출의 변동이 있는 71개 시설에서 이사회회의 승인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 상정 예산(안)의 집행 적정성 및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팀 복지영역별 담당(관)의 1차 검토, 재무·회계팀장의 2차 검토, 그리고 감사님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정·보완된 자료임.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부 설명이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내용과 함께 「자료 화면(빔프로젝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개 시설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1개 시설
	직영·수탁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6개 시설
	직영·수탁시설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2개 시설

### 【2025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개 시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5년 예산(A)	2025년 1차 추경예산(B)	증감(B-A)		2025년 예산(A)	2025년 1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장애인 (1개)	직영	연희네공동생활가정	73,197	76,440	3,243	4.4	73,197	76,440	3,243	4.4	3
노수위 (1개)	직영	가톨릭사랑평화의집	285,060	370,196	85,136	29.9	285,060	370,196	85,136	29.9	4

【2025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법인과 21개 시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5년 1차 추경예산(A)	2025년 2차 추경예산(B)	증감(B-A)		2025년 1차 추경예산(A)	2025년 2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금액	%	
법인	관할사업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9,263,514	11,324,140	2,060,626	22.2	9,263,514	11,324,140	2,060,626	22.2	8
	수위사업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93,655	114,888	21,233	22.7	93,655	114,888	21,233	22.7	9
종합 (1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121,950	2,129,311	7,361	0.3	2,121,950	2,129,311	7,361	0.3	10
영유아 (1개)	수탁	한빛어린이집	699,922	737,306	37,384	5.3	699,922	737,306	37,384	5.3	11
아동 (1개)	직영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61,152	183,770	22,618	14.0	161,152	183,770	22,618	14.0	12
노인 (8개)	직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3,611,927	3,611,288	-639	0.0	3,611,927	3,611,288	-639	0.0	13
	직영	갈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77,972	557,563	20,409	-3.5	577,972	557,563	20,409	-3.5	14
	직영	고척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38,500	527,000	-11,500	-2.1	538,500	527,000	-11,500	-2.1	15
	직영	상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90,301	575,124	-15,177	-2.6	590,301	575,124	-15,177	-2.6	16
	직영	시흥4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03,229	506,051	2,822	0.6	503,229	506,051	2,822	0.6	17
	직영	신당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87,319	609,275	21,956	3.7	587,319	609,275	21,956	3.7	18
	직영	행운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31,273	532,916	1,643	0.3	531,273	532,916	1,643	0.3	19
	직영	혜화동성당 데이케어센터	690,535	689,884	-651	-0.1	690,535	689,884	-651	-0.1	20
장애인 (10개)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96,063	96,497	434	0.5	96,063	96,497	434	0.5	21
	직영	다함공동생활가정	88,298	85,870	-2,428	-2.7	88,298	85,870	-2,428	-2.7	22
	직영	디딤자리	2,613,061	2,643,368	30,307	1.2	2,613,061	2,643,368	30,307	1.2	23
	직영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155,520	155,520	0	0.0	155,520	155,520	0	0.0	24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95,892	96,952	1,060	1.1	95,892	96,952	1,060	1.1	25
	직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480,385	405,259	-75,126	-15.6	480,385	405,259	-75,126	-15.6	26
	직영	성빈센트환경마을	2,098,574	2,107,574	9,000	0.4	2,098,574	2,107,574	9,000	0.4	27
	직영	성지보호작업장	560,042	546,616	-13,426	-2.4	560,042	546,616	-13,426	-2.4	28
	직영	소라네공동생활가정	109,284	99,794	-9,490	-8.7	109,284	99,794	-9,490	-8.7	29
직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93,917	94,673	756	0.8	93,917	94,673	756	0.8	30	

※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예산 총액 변동 없음(관·항목간 조정).

【2025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6개 시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5년 2차 추경예산(A)	2025년 3차 추경예산(B)	증감(B-A)		2025년 2차 추경예산(A)	2025년 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금액	%	
종합 (2개)	수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	2,897,443	2,897,866	423	0.0	2,897,443	2,897,866	423	0.0	34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962,440	2,927,652	-34,788	-1.2	2,962,440	2,927,652	-34,788	-1.2	35
아동 (1개)	직영	성가정입양원	2,785,901	2,785,901	0	0.0	2,785,901	2,785,901	0	0.0	36
노인 (10개)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4,307,499	4,361,054	53,555	1.2	4,307,499	4,361,054	53,555	1.2	37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3,365,000	3,392,300	27,300	0.8	3,365,000	3,392,300	27,300	0.8	38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4,109,670	3,990,000	-119,670	-2.9	4,109,670	3,990,000	-119,670	-2.9	39
	직영	구파발성당 데이케어센터	847,043	847,043	0	0.0	847,043	847,043	0	0.0	40
	수탁	동작데이케어센터	365,868	356,622	-9,246	-2.5	365,868	356,622	-9,246	-2.5	41
	수탁	상계데이케어센터	560,128	562,269	2,141	0.4	560,128	562,269	2,141	0.4	42
	수탁	성동데이케어센터	427,678	420,094	-7,584	-1.8	427,678	420,094	-7,584	-1.8	43
	수탁	양천데이케어센터	590,092	589,589	-503	-0.1	590,092	589,589	-503	-0.1	44
	직영	천호동성당 데이케어센터	663,491	663,491	0	0.0	663,491	663,491	0	0.0	45
	직영	화곡본동성당 데이케어센터	722,191	722,109	-82	0.0	722,191	722,109	-82	0.0	46
장애인 (10개)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162,596	162,778	183	0.1	162,596	162,778	183	0.1	47
	직영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	107,000	107,000	0	0.0	107,000	107,000	0	0.0	48
	직영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	483,119	472,160	-10,959	-2.3	483,119	472,160	-10,959	-2.3	49
	직영	사랑순주간보호센터	377,150	375,120	-2,030	-0.5	377,150	375,120	-2,030	-0.5	50
	수탁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333,688	337,446	3,758	1.1	333,688	337,446	3,758	1.1	51
	직영	신망애의집단기거주시설	872,118	878,721	6,603	0.8	872,118	878,721	6,603	0.8	52
	수탁	한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341,505	341,805	300	0.1	341,505	341,805	300	0.1	53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2호	174,670	174,238	-432	-0.2	174,670	174,238	-432	-0.2	54
	직영	헬렌켈러의집 주간이용센터	519,200	528,240	9,040	1.7	519,200	528,240	9,040	1.7	55
직영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85,450	85,430	-20	-0.0	85,450	85,430	-20	-0.0	56	
여성 (3개)	직영	벗들의집	682,767	648,679	-34,088	-5.0	682,767	648,679	-34,088	-5.0	57
	직영	사랑의집	378,573	370,080	-8,493	-2.2	378,573	370,080	-8,493	-2.2	58
	직영	화해의집쉼자리	581,786	575,569	-6,217	-1.1	581,786	575,569	-6,217	-1.1	59

※ 성가정입양원,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 예산 총액 변동 없음 (관·항목간 조정).

【2025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2개 시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면
			2025년 3차 추경예산(A)	2025년 4차 추경예산(B)	증감(B-A)		2025년 3차 추경예산(A)	2025년 4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금액	%	
종합 (2개)	수탁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665,000	2,670,000	5,000	0.2	2,665,000	2,670,000	5,000	0.2	63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145,076	2,130,428	-14,648	-0.7	2,145,076	2,130,428	-14,648	-0.7	64
노인 (5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5,418,270	5,042,947	-375,323	-6.9	5,418,270	5,042,947	-375,323	-6.9	65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5,547,041	5,519,781	-27,260	-0.5	5,547,041	5,519,781	-27,260	-0.5	66
	수탁	고덕양로원	2,825,130	2,851,361	27,231	1.0	2,825,130	2,851,361	27,231	1.0	67
	수탁	금천데이케어센터	642,392	616,097	-26,295	-4.1	642,392	616,097	-26,295	-4.1	68
	수탁	한빛데이케어센터	738,348	737,684	-664	-0.1	738,348	737,684	-664	-0.1	69
장애인 (14개)	직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675,316	665,408	-9,908	-1.5	675,316	665,408	-9,908	-1.5	70
	수탁	꿈자람터 장애인가족보호센터	349,300	347,000	-2,300	-0.7	349,300	347,000	-2,300	-0.7	71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458,753	472,042	13,289	2.9	458,753	472,042	13,289	2.9	72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503,680	506,889	3,209	0.6	503,680	506,889	3,209	0.6	73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398,307	390,894	-7,413	-1.9	398,307	390,894	-7,413	-1.9	74
	직영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548,500	545,391	-3,109	-0.6	548,500	545,391	-3,109	-0.6	75
	수탁	서리풀주간이용센터	356,037	350,911	-5,126	-1.4	356,037	350,911	-5,126	-1.4	76
	수탁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2,168,545	2,176,233	7,688	0.4	2,168,545	2,176,233	7,688	0.4	77
	수탁	서초구립주간이용센터	317,823	299,548	-18,275	-5.8	317,823	299,548	-18,275	-5.8	78
	수탁	한우리보호작업장	2,181,800	2,095,300	-86,500	-4.0	2,181,800	2,095,300	-86,500	-4.0	79
	수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4,646,616	4,567,563	-79,053	-1.7	4,646,616	4,567,563	-79,053	-1.7	80
	직영	햇빛자리	406,290	412,477	6,187	1.5	406,290	412,477	6,187	1.5	81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1호	143,925	143,925	0	0.0	143,925	143,925	0	0.0	82
	직영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832,889	799,407	-33,482	-4.0	832,889	799,407	-33,482	-4.0	83
여성 (1개)	직영	마음자리	1,181,042	1,176,566	-4,476	-0.4	1,181,042	1,176,566	-4,476	-0.4	84

※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1호: 예산 총액 변동 없음(관·항목간 조정).

**제7호 의안: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202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심의의 건**

◎ 의장 윤병길: 제7호 의안인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202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사무국 부회장 김원호신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제7호 의안, ‘법인 직영·수탁시설 「202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승인 심의 사안이다. 심의·승인을 요청한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은 총 75개 시설이며, 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팀 복지영역별 담당(관)의 1차 검토, 재무·회계팀장의 2차 검토, 그리고 감사님의 최종 검증을 거쳐 조정·보완된 자료임을 안내드리며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 75개 시설의 202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번호
			2025년 추경예산 (A)	2026년 예산액 (B)	증감 (B-A)		2025년 추경예산 (A)	2026년 예산액 (B)	증감 (B-A)		
					금액	%			금액	%	
법인	공공 시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1,324,140	11,032,090	-292,050	-2.6	11,324,140	11,032,090	-292,050	-2.6	91
	수익 시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14,888	89,666	-25,222	-22.0	114,888	89,666	-25,222	-22.0	95
종합 (7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129,311	2,113,814	-15,497	-0.7	2,129,311	2,113,814	-15,497	-0.7	97
	수탁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2,670,000	2,590,000	-80,000	-3.0	2,670,000	2,590,000	-80,000	-3.0	101
	수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	2,897,866	2,864,628	-33,238	-1.1	2,897,866	2,864,628	-33,238	-1.1	106
	수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420,640	2,595,063	174,423	7.2	2,420,640	2,595,063	174,423	7.2	110
	수탁	유락종합사회복지관	4,800,000	4,722,000	-78,000	-1.6	4,800,000	4,722,000	-78,000	-1.6	114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130,428	2,351,906	221,478	10.4	2,130,428	2,351,906	221,478	10.4	118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927,652	2,821,404	-106,248	-3.6	2,927,652	2,821,404	-106,248	-3.6	123
	아동 (3개)	직영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83,770	172,630	-11,140	-6.1	183,770	172,630	-11,140	-6.1
직영		성가정입양원	2,785,901	2,594,032	-191,869	-6.9	2,785,901	2,594,032	-191,869	-6.9	133
직영		우리들의공부방 지역아동센터	451,276	376,982	-74,294	-16.5	451,276	376,982	-74,294	-16.5	137
노인 (25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5,042,947	5,438,803	395,856	7.8	5,042,947	5,438,803	395,856	7.8	141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4,361,054	4,303,043	-58,011	-1.3	4,361,054	4,303,043	-58,011	-1.3	148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3,392,300	3,300,100	-92,200	-2.7	3,392,300	3,300,100	-92,200	-2.7	151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5,519,781	5,492,231	-27,550	-0.5	5,519,781	5,492,231	-27,550	-0.5	155
	직영	강일성모노인요양원	3,611,288	3,645,326	34,038	0.9	3,611,288	3,645,326	34,038	0.9	160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3,990,000	3,867,000	-123,000	-3.1	3,990,000	3,867,000	-123,000	-3.1	164
	수탁	고덕양로원	2,825,361	2,826,104	-26,257	-0.9	2,825,361	2,826,104	-26,257	-0.9	171
	직영	갈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57,563	583,757	26,194	4.7	557,563	583,757	26,194	4.7	175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쪽번호	
			2025년 추경예산 (A)	2026년 예산액 (B)	증감 (B-A)		2025년 추경예산 (A)	2026년 예산액 (B)	증감 (B-A)			
					금액	%			금액	%		
노인	직영	고척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27,000	534,000	7,000	1.3	527,000	534,000	7,000	1.3	179	
	직영	구파발성당 데이케어센터	847,043	727,365	-119,678	-14.1	847,043	727,365	-119,678	-14.1	186	
	수탁	금천데이케어센터	616,097	623,005	6,908	1.1	616,097	623,005	6,908	1.1	190	
	직영	금호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83,113	567,818	-15,295	-2.6	583,113	567,818	-15,295	-2.6	194	
	수탁	동작데이케어센터	356,622	365,215	8,593	2.4	356,622	365,215	8,593	2.4	198	
	수탁	상계데이케어센터	562,269	604,730	42,461	7.6	562,269	604,730	42,461	7.6	202	
	직영	상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75,124	594,568	19,444	3.4	575,124	594,568	19,444	3.4	206	
	수탁	성동데이케어센터	420,094	460,991	40,897	9.7	420,094	460,991	40,897	9.7	210	
	직영	시흥4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06,051	517,851	11,800	2.3	506,051	517,851	11,800	2.3	215	
	직영	신당동성당 데이케어센터	609,275	618,729	9,454	1.6	609,275	618,729	9,454	1.6	219	
	수탁	양천데이케어센터	589,589	634,294	44,705	7.6	589,589	634,294	44,705	7.6	223	
	직영	왕십리성당 데이케어센터	607,408	616,640	9,232	1.5	607,408	616,640	9,232	1.5	229	
	직영	천호동성당 데이케어센터	663,491	599,404	-64,087	-9.7	663,491	599,404	-64,087	-9.7	233	
	수탁	한빛데이케어센터	737,684	746,740	9,056	1.2	737,684	746,740	9,056	1.2	237	
	직영	행운동성당 데이케어센터	532,916	568,450	35,534	6.7	532,916	568,450	35,534	6.7	241	
	직영	혜화동성당 데이케어센터	689,884	676,992	-12,892	-1.9	689,884	676,992	-12,892	-1.9	246	
	직영	화곡본동성당 데이케어센터	722,109	719,403	-2,706	-0.4	722,109	719,403	-2,706	-0.4	250	
	장애인 (35개)	직영	꿈장에인단기보호센터	665,408	655,332	-10,076	-1.5	665,408	655,332	-10,076	-1.5	255
		수탁	꿈자람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47,000	345,200	-1,800	-0.5	347,000	345,200	-1,800	-0.5	259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472,042	467,740	-4,302	-0.9	472,042	467,740	-4,302	-0.9	262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162,778	173,873	11,095	6.8	162,778	173,873	11,095	6.8	265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96,497	94,549	-1,948	-2.0	96,497	94,549	-1,948	-2.0	268	
직영		다향공동생활가정	85,870	81,600	-4,270	-5.0	85,870	81,600	-4,270	-5.0	270	
직영		디딤자리	2,643,368	2,585,216	-58,152	-2.2	2,643,368	2,585,216	-58,152	-2.2	273	
직영		로사리아공동생활가정	107,000	103,800	-3,200	-3.0	107,000	103,800	-3,200	-3.0	277	
직영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155,520	156,781	1,261	0.8	155,520	156,781	1,261	0.8	280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506,889	477,484	-29,405	-5.8	506,889	477,484	-29,405	-5.8	283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390,894	392,784	1,890	0.5	390,894	392,784	1,890	0.5	286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25년 추경예산 (A)	2026년 예산액 (B)	증감 (B-A)		2025년 추경예산 (A)	2026년 예산액 (B)	증감 (B-A)		
					금액	%			금액	%	
장애인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96,952	97,929	977	1.0	96,952	97,929	977	1.0	289
	직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405,259	459,589	54,330	13.4	405,259	459,589	54,330	13.4	291
	직영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	472,160	474,406	2,246	0.5	472,160	474,406	2,246	0.5	295
	직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375,120	389,120	14,000	3.7	375,120	389,120	14,000	3.7	299
	직영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545,391	563,072	17,681	3.2	545,391	563,072	17,681	3.2	302
	수탁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337,446	354,965	17,519	5.2	337,446	354,965	17,519	5.2	305
	수탁	서리풀주간이용센터	350,911	342,520	-8,391	-2.4	350,911	342,520	-8,391	-2.4	308
	수탁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2,176,233	2,094,653	-81,580	-3.7	2,176,233	2,094,653	-81,580	-3.7	311
	수탁	서초구립주간이용센터	299,548	358,020	58,472	19.5	299,548	358,020	58,472	19.5	317
	직영	성빈센트환경마을	2,107,574	1,978,312	-129,262	-6.1	2,107,574	1,978,312	-129,262	-6.1	320
	직영	성지보호작업장	546,616	590,709	44,093	8.1	546,616	590,709	44,093	8.1	323
	직영	소라네공동생활가정	99,794	105,439	5,645	5.7	99,794	105,439	5,645	5.7	325
	직영	신망애의집단기거주시설	878,721	892,328	13,607	1.5	878,721	892,328	13,607	1.5	328
	직영	연희네공동생활가정	76,440	78,132	1,692	2.2	76,440	78,132	1,692	2.2	331
	직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94,673	95,540	867	0.9	94,673	95,540	867	0.9	334
	수탁	한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341,805	347,284	5,479	1.6	341,805	347,284	5,479	1.6	336
	수탁	한우리보호작업장	2,095,300	2,285,000	189,700	9.1	2,095,300	2,285,000	189,700	9.1	340
	수탁	한우리정보문화센터	4,568,563	4,610,394	42,831	0.9	4,568,563	4,610,394	42,831	0.9	343
	직영	햇빛자리	412,477	408,033	-4,444	-1.1	412,477	408,033	-4,444	-1.1	348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1호	143,925	151,113	7,188	5.0	143,925	151,113	7,188	5.0	351
	직영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2호	174,238	175,066	828	0.5	174,238	175,066	828	0.5	354
	직영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799,407	801,560	2,153	0.3	799,407	801,560	2,153	0.3	357
	직영	헬렌켈러의집 주간이용센터	528,240	430,700	-97,540	-18.5	528,240	430,700	-97,540	-18.5	361
직영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85,430	83,700	-1,730	-2.0	85,430	83,700	-1,730	-2.0	365	
여성 (4개)	직영	마음자리	1,176,566	1,004,590	-171,976	-14.6	1,176,566	1,004,590	-171,976	-14.6	369
	직영	벚들의집	648,679	650,170	1,491	0.2	648,679	650,170	1,491	0.2	373
	직영	사랑의집	370,080	351,560	-18,520	-5.0	370,080	351,560	-18,520	-5.0	382
	직영	화해의집쉼자리	575,569	589,282	13,713	2.4	575,569	589,282	13,713	2.4	386
노숙인 (1개)	직영	가톨릭사랑평화의집	370,196	329,375	-40,821	-11.0	370,196	329,375	-40,821	-11.0	390

[의안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7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임원에게 제7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7호 의안인 ‘법인 및 직영·수탁시설 「202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 제8호 의안: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사업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 승인 요청 심의의 건

◎ 의장 윤병길: 제8호 의안인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사업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사무국 부회장 김원호신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제8호 의안,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사업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사업 2016년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

분 야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 대출 사업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 체결 후, 사업 시작.</li> <li>2014년 ~ 2020년까지 <span style="float: right;">진행함.</span></li> <li>2021년 이후: 대출자에게 원리금을 상환 받아서 해당 원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반환하고 있음.</li> </ul>			
세부 사항	<b>▶ 서민금융진흥원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 승인 요청</b>			
	<b>1. 2016년 지원금 기간 연장 신청</b> <span style="float: right;">(2025. 12. 16. 기준)</span>			
	지원연도	지원기간 만료일	지원금(A)	기상환 지원금(B)
	2016	2020	11,000원	11,000원
<b>2. 기상환 대출자 현황</b>				
대출자명	대출금액	미상환금	상환율	비고
김영민	100원	30원	66%	내용증명 1회 발송(2025. 4. 2. 폐문 부재로 인접, 1회 부절.
김영민	100원	17,000원	8%	내용증명 1회 발송(2025. 4. 2. 수취 인불, 1회 부절.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사업 2016년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

3( )	1.2. 수취 인 업자 의 폐업(폐 업 일 : 1. 14.) 상 기 관 련 사 건
------	---

3. 지원기간의 연장은 총3회에 걸쳐 가능하며 2016년 지원금에 대하여 2회의 연장이 있었으며, 3회차 연장을 신청하고자 함.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8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임원에게 제8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8호 의안인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대출사업 2016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9호 의안: 법인 직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추)인 요청 심의의 건

◎ 의장 윤병길: 제9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추)인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사무국 부회장 김원호신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 부회장 김원호: 제9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시설명	소재지	임 면 사 항				비고
			면		임		
			발령일	성명	발령일	성명	
[직영 노인]	구파발성당 데이케어센터	서울시 은평구	2025. 10. 31.		2025. 11. 01.		⇒ 現 시...의 시설장 위임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계약

[참조] '붙임. 시설장 적격자 이력서' 41면

[의안 보고를 마치다.]

**[의장]** 임원분들께서는 제9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의장은 출석 임원에게 제9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9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적격자 선정 (안)’ 승(추)인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 보고 및 기타 안건

◎ 의장 윤병길: 보고 및 기타 사항을 없음을 확인하고 ‘2026년 법인 이사회 개최 일정’을 공유하다.

### **【2026년 법인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예정일 안내】**

- 정기이사회 개최 예정일: 2월 19일(목) 16:00 / 석식
  -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예정일: 5월 20일(수) 15:00
  -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예정일: 10월 22일(목) 15:00
  -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예정일: 12월 22일(화) 16:00 / 석식
- ※ 기타 특이 사안 발생시, 일정 변경 가능(임원진 사전 안내 예정).

이후,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어서 마침기도로 영광송을 바치고, 금번 이사회를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윤 병



상임이사 정 진



이 사 심 점



이 사 오 혜



이 사 전 재



이 사 김 영



이 사 김 선



이 사 권 병



이 사 김 경



감 사 황 인



감 사 오 윤

